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의2서식] <개정 2014.7.29>

[ ] 개업공인중개사 [ ] 인장등록
[ ] 소속공인중개사 [ ] 등록인장 변경 신고서

※ 해당하는 곳의 [ ]란에 v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즉시

신고인	성명(대표자)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
	주소(체류지)	
	전화번호	
개업공인중개사 종별	[ ] 법인 [ ] 공인중개사 [ ]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	
중개사무소	명칭	등록번호
	소재지	
	전화번호	
등록(변경) 사유	[ ] 개설등록 [ ] 등록인장 변경 [ ] 등록인장 분실 [ ] 등록인장 훼손 [ ] 그 밖의 사유( )	

「공인중개사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: (서명 또는 인)
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	(등록인장 인)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	→	결재	→	인장등록(변경)
신청인		시 · 군 · 구 (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)		시 · 군 · 구 (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)		시 · 군 · 구 (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)		시 · 군 · 구 (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)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